원격수업 운영규정

제정 2019.06.10
개정 2020.12.14
개정 2021.09.27
개정 2022.05.02
개정 2024.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4 규정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원격수업"이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실시간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 모두를 의미한다.

②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된 수업의 경우에도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이상이면 원격수업으로 인정한다.

제3조의1(위원회) ①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격수업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구성은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3조의2(위원회 회의 및 심의사항)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원격수업 제반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원격수업 강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다.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라. 원격수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교과) ①원격수업의 운영교과목은 스쿨별 교육과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전공별 교육과정 편성과목 수의 30% 이내로 개설한다. 단, 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모집정지전공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수강대상) 원격수업 운영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우리대학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타 대학 및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 방법 및 시기는 매 학기(계절수업 포함) 일반교과 수강신청과 같다.

②원격수업의 수강은 개인별 졸업이수 학점의 30% 이내로 한다.

제7조(수업시수)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는 1차시당 VOD 콘텐츠의 경우 진행 시간이 25분 이상(1학점 기준) 되도록 제작하고 VOD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8조(수업) ①우리대학의 원격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동시적 원격수업)과 일부 사전제작 콘텐츠(VOD)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의 형태로 운영한다. 단, 대학 e-러닝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온라인공개수업 콘텐츠(MOOC) 등의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나 위원회가 승인한 사전제작 콘텐츠(VOD)의 경우는 비동시적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원격수업에 대해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

③원격수업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상의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동시적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원격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원격수업은 주차별 강의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제9조(출결관리) ①원격수업의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의 출결체크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성적평가) ①지필고사는 출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e-러닝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등을 통해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는 온라인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평가를 할 수 있다.

②실기평가나 발표 등의 평가는 온라인평가를 할 수 있다.

③온라인평가를 할 때는 평가근거자료를 LMS 및 파일로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수인정 및 강사료) 원격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원격수업 강의평가 및 원격교육콘텐츠 품질관리) ①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개선 및 환류를 위해 학기당 2회 이상 학생 대상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비동시적 원격수업을 위해 개발한 원격교육콘텐츠는 교육활용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원회에서 품질관리 심의를 하며, 적절한 사후 조치를 통해 유지관리 한다.

③삭제

④원격수업 중 학기말에 실시한 학생대상 만족도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 교원

에게 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할 수 있다.

⑤제④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저작권) ①대학의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된다.

②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교수자에게 있으며 대학은 콘텐츠에 대한 활용권을 갖는다.

③콘텐츠 개발자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경우, 그 개발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대학의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⑤강의영상을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원격 수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호의 행위는 엄격히 차단되어야 한다.

가. 원격수업 콘텐츠 및 수업영상과 자료를 캡쳐, 복제, 배포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나. 수업상황을 녹화, 녹음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다. 원격수업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수자의 허락없이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⑦제⑥항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

제14조(기타) ①비정규교과목으로 개설한 원격수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및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정상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삭제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2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2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